공 시 송 달

성 명(청구인)	이 문 우	생년월일	1970. 1. 28.
주 소	대구 북구 작원길 ○○, ○○○동 ○○○○호		
사건번호 및 사건명	2020-7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		
공시송달 주요내용	1. 사건 당사자 ○ 청 구 인: 이문우 ○ 피청구인: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장 2. 송달할 문서 ○ 2020년 재결 제73호 재결서 정본 ○ 재결 주문: 피청구인이 2020. 2. 13.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,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직종을 '159. 제도사 및 기타 인쇄·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'으로 정정하라. 3. 공시송달 기간: 2021. 1. 23.~2021. 2. 5. 4. 공시송달 사유: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가 '수취인 불명'의 사유로 반송되어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2항 및 행정심판법 제57조,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.		

2021. 1. 22.

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

※ 비 고

1. 본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부터 14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.
2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소의 일부분을 익명화하였습니다.
3. 본 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.
4. 본건에 관한 문의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층 고용보험심사위원회(담당 , 양은희 ☎ 044-202-7911)